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28.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15.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은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8.)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순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며, 일반공급의 자세한 자격사항은 각 공급별 자격 조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순천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3조 및 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계약금 10% 납부 후 전매 가능합니다.
 (전매 일정 및 전매 가능여부는 입주지원센터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3. 07. 03.(월)	2023. 07. 06.(목)	2023. 07. 10.(월) ~ 2023. 07. 12.(수)	2023. 7. 13.(목) ~ 2023. 7. 14.(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공고문 7~8 페이지 참조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순천시 조곡동 634번지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단지내상가 2층	순천시 조곡동 634번지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단지내상가 2층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창구, 견본주택 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5.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순천시 건축과–27160호(2023.06.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63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총 632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4세대 [일반공급 14세대]
■ 입주시기 : 계약 후 60일내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3930028	01	84.9938A	84A	84.9938	25.3776	110.3714	53.8254	164.1968	49.5923	8	8
		02	84.9400B	84B	84.9400	25.4041	110.3441	53.7913	164.1354	49.5609	4	4
		03	84.9880C	84C	84.9880	26.9132	111.9012	53.8217	165.7229	49.5889	1	1
		04	112.7130B	112B	112.7130	27.5557	140.2687	71.3795	211.6482	65.7659	1	1
	합 계										14	1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호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 후 60일내
84.9938A	84A	101동 0501호	85,689,000	312,311,000	-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102동 1503호	85,689,000	312,311,000	-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102동 2201호	85,689,000	312,311,000	-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108동 1803호	85,689,000	312,311,000	-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109동 0801호	85,689,000	312,311,000	-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109동 0901호	85,689,000	312,311,000	-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110동 0301호	83,321,000	303,679,000	-	387,000,000	38,700,000	348,300,000
		110동 0903호	85,689,000	312,311,000	-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84.9400B	84B	109동 0804호	83,967,000	306,033,000	-	390,000,000	39,000,000	351,000,000
		109동 1904호	83,967,000	306,033,000	-	390,000,000	39,000,000	351,000,000
		110동 0204호	81,599,000	297,401,000	-	379,000,000	37,900,000	341,100,000
		110동 1104호	83,967,000	306,033,000	-	390,000,000	39,000,000	351,000,000
84.9880C	84C	108동 1602호	85,689,000	312,311,000	-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112.7130B	112B	105동 1602호	108,055,000	381,768,000	38,177,000	528,000,000	52,800,000	475,20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무상옵션, 유상옵션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승계 거부 시 계약 불가)

2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순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 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3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2023. 07. 03.(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 일시: 2023. 07. 06.(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3. 07. 13.(목) ~ 2023. 07. 14.(금) (10:00~16:00) • 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634번지, e편한세상 순천어반타워 단지내상가 2층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 07. 06.(목) ~ 2023. 07. 15.(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 07. 0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일	2023. 07. 10.(월) ~ 2023. 07. 12.(수) 10:00~16:00 (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처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634번지,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단지내상가 2층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요망.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발급기간 :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	해외체류 관련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청약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합니다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합니다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1억원~10억원 이하 15만원) 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
제3자 대리계약 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분양 사무실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KB 국민은행	349401-04-296022	한국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잔금까지의 분양대금도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된 호수에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당첨자 본인(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 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최초 계약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미납 시「국세기본법」제 47조의4 제9항에 의거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최대 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 구입 후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VI 추가선택품목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사항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모든 세대는 발코니 확장된 세대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진행 시 하기의 발코니 확장, 옵션(유상, 무상) 항목은 추가,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금	비 고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84A	**12,500,000**	1,250,000	11,250,000	
84B	**12,500,000**	1,250,000	11,250,000	
84C	**12,500,000**	1,250,000	11,250,000	
112B	**14,500,000**	1,450,000	13,05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구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대금 납부계좌	KB 국민은행	349401-04-296288	한국자산신탁(주)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구분		총 가구 및 가전 옵션 비용	계약금	잔금	비 고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84A	101동 0501호	-	-	-	옵션 없음
	102동 1503호	**14,450,000**	1,445,000	13,005,000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RR39T7695AP) + 변온냉장고 (RZ24T5660AP) + 김치냉장고(RQ32T7645AP) ・삼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삼성) 에어드레서(DF60T8300WL/R) / 붙박이장 ・주방측면 대형팬트리장(도어+선반+인출식 서랍)
	102동 2201호	**18,920,000**	1,892,000	17,028,000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RR39T7695AP) + 변온냉장고 (RZ24T5660AP) + 김치냉장고(RQ32T7645AP)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스타일러 (S3HFB) / 붙박이장 ・SK매직) 빌트인 식기세척기 12인용 (DWA-81R5B)

					・SK매직) 쿼드인덕션 (IHR-BQ30E)
					・SK매직) 스팀오븐 (EON-B401SA)
					・주방측면 대형팬트리장(도어+선반+인출식서랍)
					・침실2 붙박이장
	108동 1803호	**13,240,000**	1,324,000	11,916,000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RR39T7695AP) + 변온냉장고(RZ24T5660AP)+ 김치냉장고(RQ32T7645AP)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주방측면 대형팬트리장(도어+선반+인출식 서랍)
					・침실2 붙박이장
	109동 0801호	**15,990,000**	1,599,000	14,391,000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RR39T7695AP) + 변온냉장고 (RZ24T5660AP) + 김치냉장고 (RQ32T7645AP)
					・삼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SK매직) 하이브리드 쿡탑_가스1구+인덕션2구 (GRA-BI320H)
					・SK매직) 스팀오븐 (EON-B401SA)
					・주방측면 대형팬트리장(도어+선반+인출식 서랍)
					・LG) 스타일러 (S3HFB)
					・침실2 붙박이장
	109동 0901호	-	-	-	옵션 없음
	110동 0301호	**6,250,000**	625,000	5,625,000	・삼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110동 0903호	**6,250,000**	625,000	5,625,000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84B	109동 0804호	-	-	-	옵션 없음
	109동 1904호	-	-	-	옵션 없음
	110동 0204호	-	-	-	옵션 없음
	110동 1104호	-	-	-	옵션 없음
84C	108동 1602호	**12,830,000**	1,283,000	11,547,000	・LG)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L1/R1) + 주방 팬트리장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 스타일러 (S3HFB)
					・SK매직) 하이브리드 쿡탑_가스1구+인덕션2구 (GRA-BI320H)
					・SK매직) 빌트인 식기세척기 12인용 (DWA-81R5B)
					・SK매직) 스팀오븐 (E0N-B401SA)
					・침실 2 붙박이장
112B	105동 1602호	**14,570,000**	1,457,000	13,113,000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공간
					・SK매직) 빌트인 식기세척기 12인용 (DWA-81R5B)
					・SK매직) 쿼드 인덕션 (IHR-BQ30E)
					・SK매직) 스팀오븐 (EON-B401SA)
					・주방전면 대형 팬트리장(인출식서랍장)
					・침실3 붙박이장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Ⅶ 기타

■ 시행사 및 시공사

구분	회사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정원에이치앤디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304-1, 3층(광천동)	842-81-01659
시행수탁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107-81-97673
시공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676-87-01904

계약장소	문의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634번지,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단지내상가 2층	061-755-971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이외의 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0.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입형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정원에이치엔디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정원에이치엔디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이하 ㈜정원에이치앤디는 '시행위탁자', 한국자산신탁(주)는 '시행수탁자'라 한다)
-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시행수탁자'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입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가 부담하고 시행수탁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시행수탁자가 매수인의 지위 및 시행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수익자 겸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수익자겸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수탁자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시행위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합니다.